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15호

글렌데일 시 비상사태 권한에 의거

발령일: 2020년 7월 31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명령에 따른 체육관 실외 운영을 위한 허가증 신청서

수수료의 면제와 임시 수용인원증서의 허용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자라나는 우려로 필수불가결하였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짧은 기간에 확진자 수가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국은 코로나19가 사람 간에 쉽게 퍼진다고 알렸으며 대중은 가능할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한 방침과 일과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급하였다. 또한, 2020년 3월16일, 시의회는 특정 공공장소의 출입을 막고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글렌데일 시는 손 위생, 호흡 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노력을 다시 두배로 강화하였다. 지역사회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막기 위해 시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고를 돕기 위해, 글렌데일 지방정부법 2.84장에 의거한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의 비상사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로 피해입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적절한 사안의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발령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시의회는 규칙과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 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필수서비스 중에서 소매업소, 체육관, 개인관리업소 등 특정업소를 단제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코로나19 명령의 통제를 위한 직장과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게 재개방하기와 (“카운티 명령”) 일치하여 결의안 20-29호를 채택하였다.

2020년 5월 15일, 글렌데일의 결의안 20-29호는 만기되었고 그 업소와 영업은 카운티명령으로 계속 규제한다.

2020년 5월 26일경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관은 카운티 명령을 수정하였고 업소가 카운티 재개방 규정에 부합하면 식당 내 식사서비스를 위한 식당과 가게 내부의 쇼핑서비스를 위한 소매점에 대해 부분적인 재개방을 허가하도록 여러가지 추가적인 수정을 하였다.

2020년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재택대피령의 수정안과 일치하여 글렌데일 결의안 20-29호는 만기되었고, 만일 업소가 카운티 규정에 부합하였으면, 글렌데일의 특정 업소는 재개방하고 근무지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2020년 7월 1일, 개빈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근 늘어난 19개 이상 카운티의 식당과 실내 업소에 대해 두번째로 폐쇄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장은 동일한 명령을 내렸다.

2020년 7월14일경에, 카운티 명령은 체육관, 이발소, 미용실, 개인관리서비스 등 특정한 실외사용을 허가할 것으로 수정하였다.

커뮤니티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고, 그들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보건관은 카운티에서 사회적 모임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

공중보건명령으로 시에서 특정한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았다. 글렌데일 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에 직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시에서 지역업소를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며, 권고안 중에서 특정업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근무지로 돌아가기 규정에 상세히 나온 필수 보건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준수하면서, 실외영업을 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정업소의 실외영업허가로 공중보건명령과 규정을 지키면서 경제회복 목표를 진전한다.

비상사태서비스 국장은 공공이익과 공중보건 및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판정하면, 모든 해당 공중보건명령과 규칙을 따라서 허가서 신청비용을 면제하고 실외를 포함하여 판매소와 영업소를 확장한다.

따라서, 글렌데일 시정부법 2.84장에 의거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서비스 국장은 즉시 유효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령하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거나 카운티 명령이 실내영업을 허가하기 위해 수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항. 체육관과 헬스클럽. 글렌데일 시법령 30.70.30G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영업방식을 바꾼 체육관과 헬스클럽에서, 카운티 명령과 재개방 규정으로 요약된 실외 체육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임시 인원수용증이 있어야한다.

-임시 수용인원 허가증에 의한 임시사용을 위한 허가증 신청비는 면제된다.

-타이틀 30이나 글렌데일 시법령의 기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명령이 대기중인 비상사태동안, 체육관, 피트니스 신체활동은 실외에서 할 것을 허가한다.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외공간은 사유건물에만 있어야 한다.

-체육관 운영자는 영업을 실외에서 할때 주차장에서 최소한 50%를 유지해야 한다. 주차장을 공유하여 50% 주차장 최소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업소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이웃들의 성공적인 청원절차 하에 줄어든 주차장에 자격이 생긴다.

-커뮤니티 서비스와 공원국장은 실외 체육관과 피트니스 신체활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수료납부, 보험증의 증명 등으로 특정 필수요건으로 시설허가증이 발급된 시가 소유한 공원을 재량으로 파악한다.

2항. 모임, 실내 식사, 사회적 거리두기, 얼굴 가리개에 관한 것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보건관, 글렌데일 시의 공중보건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면서 업소나 개인이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해도 된다고 이 명령을 해석하지 않고 해석하면 안된다.

3항. 공공명령의 위반은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을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0항에 의거하여 시 검찰청에 고소하기 위해 회부될 수 있다. 집행관은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본인의 재량을 사용하고 항상 명령의 의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문에서 규정된 다른 집행법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글렌데일 지방자치법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될 수도 있다.

날짜: 2020년 7월 31일

시간: 3: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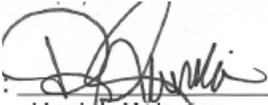
양식에 대해 승인함:
마이클 J 가시아, 시검사

서명인: 

직분: 시검사

날짜: 7/31/2020

서명인:



루빅 골라니안
비상사태서비스 국장대행